



제410회국회(정기회)
제6차보건복지위원회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■ 최연숙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4166호)

2023. 1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진선희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3
1. 치료보호기관 시설·인력요건 규정 등 관리체계 정비	3

I. 개요

1. 최연숙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24166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최연숙의원 등 10인
- (2) 제 안 일 : 2023. 9. 1.
- (3) 회 부 일 : 2023. 9. 4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.

하지만,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에서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, 지정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33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음. 따라서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, 평가 및 재지정 등 관련 규정을 현실화,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, 지정 절차, 평가, 재지정 및 지정취소, 전문교육,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 관련 규

정을 명문화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0조).

Ⅱ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치료보호기관 시설·인력요건 규정 등 관리체계 정비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치료보호기관의 시설·인력요건을 규정하고(제2항), 시·도 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·지정한 경우에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(제3항), 치료보호기관의 주기적 평가 및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고(제4항·제5항), 치료보호기관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운영하도록 하며(제7항), 판별검사·치료보호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·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(제8항·제9항).

현행	개정안
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 ① (생략)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,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.	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 1.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,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등 2.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돕거나 그 외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등 3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

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,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·운영 및 지정,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,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·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

③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치료보호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마약류중독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

2.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

3.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
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,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.
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의 제2항제2호에 따른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·운영하여야 하며,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⑧ 제6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,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⑨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.

가.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

나.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
다.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·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

라.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

<신 설>

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·운영, 지정·평가·재지정, 지정취소,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, 전문교육,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와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·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– 6 –

나. 검토의견

- (종합검토) 개정안은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로 제40조제2항부터 제11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있는데,
- i) 현행법 제40조제2항~제5항의 순서를 조정하여 재배치하고,
 - ii) 「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(대통령령)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로 상향규정하며,
 - iii) 치료보호기관의 평가·재지정 및 전문교육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.

<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>

안 제40조	내용	검토
제2항	치료보호기관의 시설·인력요건	시행령 제3조제2항 상향
제3항	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 설치·지정한 경우 복지부장관에 통보 의무화	시행령 제3조제3항 상향
제4항	치료보호기관 3년마다 평가 및 재지정	신설
제5항	지정·재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의 취소요건	신설
제6항	관별검사·치료보호 규정	법 제40조제2항과 동일
제7항	관별검사·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 개발·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	신설
제8항	중앙·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근거	법 제40조제4항과 동일
제9항	중앙·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사항 규정	시행령 제5조 상향
제10항	관별검사·치료보호에 대한 중앙·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 의무화	법 제40조제3항과 동일
제11항	치료보호 등 관련 세부사항 대통령령 위임	법 제40조제5항과 동일

- (제2항: 치료보호기관의 시설·인력기준) 현재 치료보호기관의 시설·인력기준은 현행법 제40조제5항¹⁾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「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」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, 개정안은 치료보호기관의 시설·인력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시설요건으로 소변·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하는 기기·장비와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돕는 보조적 검사장비를, 인력요건으로 정신의학과 전문의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²⁾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규정하고 있음.
- 시행령의 시설·인력기준과 비교할 때, 개정안은 분석시설·장비와 보조적 검사장비 등으로 시설요건을 구체화하고, ‘심리검사요원’을 ‘「정신건강복지법」상의 정신건강전문요원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시설·인력기준을 보완하여 규정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점이 있음.
- 「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」은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시설 및 인력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일부 개정안이 2023년 10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음³⁾.

1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·운영 및 지정,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,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·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정신건강복지법)」 제17조(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(이하 “정신건강전문요원”이라 한다)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정신건강간호사,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.

3) ◎ 보건복지부공고제2023-662호

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“행정절차법”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0일
보건복지부장관

< 시행령 및 개정안 비교 >

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		개정안 제40조
현행	개정 시행령(안)	
② 시·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·운영하거나,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중 <u>다음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</u> 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		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<u>다음의 각 호의 시설 및 인력</u> 을 갖추어야 한다.
1. 판별검사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	1. 판별검사에 필요한 소변,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등 검사장비	1. 마약류 사용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,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등 2.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돕거나 그 외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등
2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심리검사요원	2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	3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
3.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		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

□ **(제3항: 시도지사 통보 의무화)** 현행법 제40조제1항4)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‘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’인데, 개정안은 시·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·지정한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.

□ 「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」 제3조제3항에서는 시·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·지정한 경우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, 개정안 제40조제3항은 동일한 내용⁵⁾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치료보호기관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.

4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

5) 경미한 자구 수정(보고→통보)

< 현행 시행령 및 개정안 비교 >

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	개정안 제40조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③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□ (제4항·제5항: 치료보호기관의 평가·재지정 및 취소규정 신설) 개정안 제40조제4항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도 하여금 3년마다 치료보호기관의 시설·인력기준 충족여부와 마약류중독 치료실적 등을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,

동조 제5항은 i) 치료보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·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지정·재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, ii) 치료보호기관이 지정·재지정 취소를 원하거나 평가 결과 시설·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·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 취소요건을 함께 정하고 있음.

□ 현행법령은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평가, 재지정 및 지정·재지정 취소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, 현재로서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시설·인력현황 등을 따로 점검하지 않고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.

- 현재까지 치료보호기관에서 지정해제된 기관은 총 2개⁶⁾인데, 경영부담 및 치료보호 환경조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해당 의료

6) □ 지정병원에서 해제된 병원별 해제 사유

- 강남을지병원('18.12.31 지정해제)
 - 미수금 누적으로 인한 경영부담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정해제 요청
 - 해당 의료기관의 지정 해지요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권자인 관할 시·도지사가 지정 해지했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함
- 큰빛병원('19.2.15 지정해제)
 -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적합한 병동환경 미설치, 치료보호 관련 전문인력과 프로그램 부재로 인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정해제 요청

기관에서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, 이와 관련된 별도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<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시기 및 해제현황⁷⁾ >

	병 원 명	지정시기		병 원 명	지정시기
1	서울시립은평병원	'08 이전	12	용인정신병원	'08 이전
2	국립정신건강센터	'10.9.14.	13	계요병원	'08 이전
	강남을지병원	'13.11.7. 해제(18.12.31)	14	국립춘천병원	'10.4.7.
3	부산광역시의료원	'11.12.29	15	청주의료원	'10.9.29
4	대구의료원	'10.10.08	16	국립공주병원	'10.4.7
5	대구대동병원	'23.3.16	17	원광대학교 병원	'16.6.10
6	인천광역시의료원	'08 이전	18	신세계병원	'23.2.24
7	참사랑병원	'16.4.22	19	전북마음사랑병원	'23.2.24
8	광주시립정신병원	'08 이전	20	국립나주병원	'08 이전
9	참다남병원	'09.9.22	21	포항의료원	'10.10.18
	큰빛병원	'10.4.14 해제(19.2.15)	22	국립부곡병원	'08 이전
10	마더스병원	'16.2.3	23	양산병원	'14.1.24
11	경기도의정부의료원	'08 이전	24	연강병원	'12.1.6

□ 이에 개정안은 치료보호기관의 지정 이후에도 3년 주기로 시설·인력 현황과 치료실적 등을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평가 결과 시설·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기관이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정·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 치료보호기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.

7) 출처: 보건복지부

식약청에서 복지부로 사업 이관('08)됨에 따라 '08년 이후 지자체 공문 기준으로 작성(식약청에서 복지부로 사업 이관('08) 이전의 정확한 지정 시기 관련 자료 미보유)

- (제7항: 전문교육 신설) 개정안은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·운영하도록 하고,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-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이 있는데,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판별검사·치료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바,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개발·운영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.
- (제8항~제10항: 치료보호심사위원회) 개정안은 판별검사·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면서(제8항),

각 심사위원회별로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(제9항), 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판별검사·치료보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(제10항).
- 개정안 제40조제8항·제10항은 각각 현행법 제40조제4항·제3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문순서를 변경하여 재배치한 것이고, 안 제40조제9항은 「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」 제5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것으로, 중복되는 일부 문구 등을 정리하여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< 현행 법령 및 개정안 비교 >

현행법	개정안 제40조
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 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,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.	⑧ 제6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,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.
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(대통령령)	
제5조(각 위원회의 기능) ① 중앙치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.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3.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4.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·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치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2.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·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·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	⑨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. 가.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나.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.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·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라.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·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마.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.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. 가. 시·도지사가 설치·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나.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·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다.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·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현행법	
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하려면 각각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□ 다만, 개정안 제40조제8항(=현행법 제40조제4항)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, 최근 5년간 심의실적이 전무한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.

-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, 설치 필요성 및 타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 제40조제8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- 참고로, 울산·경남에서는 동 지역의 치료보호 대상자가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됨에 따라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해당 지역의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⁸⁾.

<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실적⁹⁾ >

		운영 현황	연도별 치료보호심의현황				
		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총		회의개최건수	51	43	36	45	73
		심의건수	382	305	347	641	447
중앙		회의개최건수	2	2	3	4	4
		심의건수	90	71	193	134	176
지방	서울	회의개최건수	13	12	12	12	12
		심의건수	126	67	53	152	73
	부산	회의개최건수	1	2	2	-	1
		심의건수	1	5	2	-	1
	대구	회의개최건수	4	1	-	-	5
		심의건수	4	1	-	-	4
	인천	회의개최건수	12	7	6	7	8
		심의건수	57	87	66	148	74
	광주	회의개최건수	2	1	-	-	-
		심의건수	2	1	-	-	-

8) 출처: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

9) 출처: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

	대전	회의개최건수	1	-	8	4	7
		심의건수	1	-	8	4	7
	울산	회의개최건수	-	-	-	-	-
		심의건수	-	-	-	-	-
	세종	회의개최건수	1	-	-	-	4
		심의건수	1	-	-	-	4
	경기	회의개최건수	5	9	1	5	4
		심의건수	88	64	21	190	83
	강원	회의개최건수	-	-	-	-	5
		심의건수	-	-	-	-	5
	충북	회의개최건수	3	3	3	3	6
		심의건수	4	3	3	3	-
	충남	회의개최건수	2	3	-	5	8
		심의건수	2	3	-	5	8
	전북	회의개최건수	3	1	-	-	5
		심의건수	3	1	-	-	7
	전남	회의개최건수	1	2	-	2	1
		심의건수	1	2	-	2	1
	경북	회의개최건수	1	-	1	3	3
		심의건수	2	-	1	3	4
	경남	회의개최건수	-	-	-	-	-
		심의건수	-	-	-	-	-
	제주	회의개최건수	-	-	-	-	-
		심의건수	-	-	-	-	-

다.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

- (식품의약품안전처)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기준·결과, 재지정·지정 취소 및 치료보고심사위원회 심의규정 등을 개정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함.
- (보건복지부)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규정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,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도입하고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치료보호 활성화 및 질 관리, 치료보호기관 인력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동의하는 입장임.
- (행정안전부)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, 설치 필요성 및 타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 제40조제8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504